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김 경 록*

1. 머리말
2. 원말명초 군사상황과 홍무제의 군사인식
3. 홍무제의 군제정비와 통치구상
4. 홍무제의 군사정책의 특징과 한계
5. 맺음말

1. 머리말

원명교체는 동아시아사 북방민족의 통치에서 한족중심의 통치로 전환되었다는 점 이외에 전통적인 한족중심의 각종 사상과 제도가 보다 정밀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가운데 홍무연간 시대사 및 홍무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¹⁾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1) 홍무연간 혹은 홍무제에 대한 연구는 전순동, 박원호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군사 문제에 관련해서 서인범의 연구가 주목된다. 전순동은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홍무

그러나 명초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그나마 대부분이 중국학계에서 이루어진 성과라 할 것이다. 홍무제의 군사 사상과 명대 군사사상을 분석한 연구,²⁾ 명초 元帥府-大都督府-五軍都督府로 변화된 중앙의 최고 군사기구와 衛指揮使司-都指揮使司로 변화된 지방군사기구를 비교분석한 연구,³⁾ 명대 군제건설의 원칙과 변화과정을 정리한 연구,⁴⁾ 명대 군제사 연구의 한계와 경향을 분석한 연구,⁵⁾ 홍무연간 북부 변방의 건설과정을 정리한 연구,⁶⁾ 등이 있다.

전근대 조선시대 한중군사 및 동아시아사에서 기본적인 군사사상, 군사제도, 전쟁사 분석에 필수적인 명의 군사제도 및 군사정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명대 군사정책의 시작점인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을 분석, 정리한다. 홍무제는 명의 건국 황제라는 점뿐만 아니라 명대를 관통하는 모든 제도와 전장을 제정

제와 명 왕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전순동, 『명왕조성립사연구』, 개신, 2000. 박원호는 홍무제에 대한 저명한 평전인 오함의 『주원장전』을 완역하고, 조선과 명과의 관계사 연구에 큰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오함 저, 박원호 옮김,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 박원호,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서인범은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명대 병제사를 일관하였으며, 명대 군사문제에 친학하는 연구성과를 내었다. 서인범, 『明代兵制史の研究』, 東北大學 박사학위논문, 1999. 기타 관련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순동, 「명초 환관의 외교 활동 실태와 그 특성」, 『중국사연구』77, 2012; 윤성익, 「明初(洪武~永樂期)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倭寇」, 『명청사연구』35, 2011;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37, 2012;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53, 2016; 임상훈, 「홍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 : 홍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제」, 『동양사학연구』129, 2014. 등.

- 2) 傅玉璋, 「朱元璋의軍事思想-明初統治措施探索之五」,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1-1; 范中義, 「明代軍事思想簡論」, 『歷史研究』1996-5.
- 3) 黃阿明, 「明建國前朱元璋集團의軍事領導機構及其演變」, 『史林』2010-3.
- 4) 陳表義, 譚式攻, 「明代軍制建設原則及軍事的衰敗」, 『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 18卷2期, 1996.
- 5) 서인범, 「명대 군제사의 제문제」, 『중국사연구』14, 2001.
- 6) 趙毅, 胡凡, 「論明代洪武時期的北部邊防建設」,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74期, 1998.

하였으며, 자신이 경험한 원말의 시대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국 명의 지향점을 제시한 점에서 단순한 개국황제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장에서 주원장이 군사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을 전후한 원말 군사상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데, 이를 원군과 홍군, 한인군웅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군사상황에 따라 홍무제가 경험하고 시행한 주요 군사활동을 명 건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으로써 홍무제의 군사인식을 분석한다. 3장은 홍무제가 경험하고 인식한 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제정비과정 및 편제상의 특징을 정리한다. 특히, 군정체계와 군령체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며, 이러한 군사체계가 통치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4장은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이 가지는 특징과 그 한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명초의 군사체계, 군사사상, 군사정책 등을 시론적이거나 정리함으로써 조선과 명의 군사관계사 연구 및 조선의 군사사 연구에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원말명초 군사상황과 홍무제의 군사인식

원나라의 중원통치는 모순적인 측면이 많았다. 大都를 중심으로 화북, 하남 등 장강 이북지역은 실질적인 지배를 한 반면, 장강 이남지역은 명목적인 지배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몽골족 중심의 한족천시 경향이 있었음에도 한족의 민족적 움직임의 여지가 많았다. 이는 원대 법률체계에서 蒙, 漢 이원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즉, 정복왕조로서 몽골이 중원을 지배하면서 한편

7) 武波, 「元代法律問題研究-以蒙漢二元視覺的觀察爲中心-」, 南開大學研究生院 博士

으로 漢法을 채용하고, 중국 전통의 법률제도를 학습 및 계승하면서도 몽골전통의 蒙法을 승습하여 적용한 점이다. 그러나 원 지배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경제적 착취는 고질적인 현상으로 많은 한인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원말에 이르러 궁정의 내분과 정치 부패로 말미암은 사회불안, 빈번한 황하범람과 같은 자연재해, 재정의 궁핍을 交鈔의 남발로 막고자 하였던 정책의 실패⁸⁾ 등이 겹쳐 결국 원말 종교반란,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원대 국가재정의 원천은 대외적인 교역도 있지만,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곡창지역의 조세수입이었다. 원 중앙정부는 이곳을 중시하여 대규모 농업생산력을 위한 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漕運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했다.⁹⁾ 정부주도의 수리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주요 운하를 관통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몽골지배층의 농민착취는 생산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만연하여 농민층을 비롯한 한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원말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뭄과 홍수 등 재변으로 인한 농민층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특히, 1344년(지정 4) 황하의 대범람은 하남 일대뿐만 아니라 산둥지역까지 큰 피해를 주었다.¹⁰⁾ 황하의 범람에 대한 원 중앙정부의 대응은 하남행성의 주민을 강제 동원한 치수사업으로 이어졌으며, 기존의 재해와 착취에 추가된 노역 동원은 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¹¹⁾

學位論文, 2010.

- 8) 叶世昌, 「元代的紙幣流通制度」『中國經濟史研究』1997-4期. 93~94쪽; 徐云子, 「試論元代鈔法」『江蘇錢幣』2011-1期. 4쪽. 원대 초법은 정교하게 갖춰진 제도로 인해 정책 발행, 높은 현금 태환율, 물가대비 일정한 비율 등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었지만, 후기에 재정악화로 인해 과도하게 발행하여 불태환지폐로 바뀌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
- 9) 潘清, 「元代江淮流域水利建設述論」『學術研究』2014-12期. 105쪽.
- 10) 程亞琮, 「元代河南江北行省自然災害研究」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65~67쪽.
- 11) 『元史』권47, 本紀42, 順帝5. 1351년(지정 11) 원나라는 공부상서 賈魯를 總治河防使로 임명하여 황하의 범람을 막도록 하였다. 가로는 汴梁에서 大名에 이르는 13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들은 백련교를 비롯한 종교에서 현실의 탈출구를 찾았다. 당시 은밀하게 교세를 확장하던 종교는 다원적이며 외래적인 요소가 있었다.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의 구세주에서 찾아 彌勒佛과 明王의 出世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¹²⁾ 1337년(지원 3)에 信陽州에서 胡閏兒가 봉기하였지만 곧 진압되었다. 이후 1351년(지정 11)에 潁州에서 劉福通, 杜遵道, 羅文素, 盛文郁 등이 백련교 宗師 韓山童을 옹립하여 봉기하고자 하였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다. 그러나 그 세력은 한산동의 아들 韓林兒를 다시 추대하여 황하 제방공사에 동원되어 불만이 많았던 하남지역 백성들을 선동했다.¹³⁾ 이들은 원의 통치에 반대하고 새로운 명왕의 출세를 강조한 점에서 紅軍, 紅巾軍, 香軍 등으로 불렸다.

초기 홍군은 영주에서 유복통, 두준도 등이 주도한 세력과 湖北의 蕪春, 黃岡에서 彭瑩玉, 布王三, 孟海馬 등이 주도한 세력이 淮水에서 漢水까지 원의 중부지역을 차단하며 세력을 떨쳤다. 이들은 1355년(지정 15) 한림아를 추대하여 황제를 칭하고, 亳州에서 宋 용봉정권을 수립하고 연호를 龍鳳이라 했다. 홍군은 이후 주변의 세력을 병합하면서 원군과 전투를 치루었다. 홍군은 참여목적의 차이로 인하여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한림아의 宋이 가진 명성에 의탁하여 蕪水에서 국호를 天完, 연호를 治平으로 삼아 황제를 칭한 徐壽輝, 定遠縣의 土豪출신으로 濠州에서 봉기한 郭子興 등이 원군에 연이어 패한 홍군과 함께 개별적인 군사집단으로 존재했다.¹⁴⁾

路的 백성 15만명을 동원하여 제방사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12) 구체적인 명교에 대한 내용은 吳晗, 『明教與明朝』, 『讀史札記』, 三聯書店, 1956. 참조하기 바란다.

13) 『庚申外史』 上.

14) 오함 저, 박원호 옮김,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 50~82쪽.

이 시기 군사상황은 원나라 군대, 한인군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군사측면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원이 河南行省에서 발생한 白蓮教徒의 亂을 기점으로 확산된 원말 한인군웅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적진분열의 양상을 보여주며 자중지란에 빠져 기본적인 군사작전을 펼치지 못했다. 원나라는 하남에 방대한 官屯田을 설치하고 중원통치의 근거지로 大都를 비롯한 몽골지배층의畿內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며, 많은 軍戶를 배치하여 군사요충지로 삼았다.¹⁵⁾ 원의 한인 거주지역에 대한 군대편제는 지방에 몽골군과 探馬赤軍(色目諸部族軍)을 주력으로 한 駐防軍을 주둔시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복통을 비롯한 紅軍에 대한 대응은 내부분열의 양상을 띄었다.

河南行省平章이었던 바얀(伯顏)의 도움으로 친왕에서 황제가 된 順帝는 승상으로 권력을 진행한 바얀을 제거하고 승상이 된 퉁토(脫脫), 다시바투르(答失八都魯), 볼로 테무르(孛羅帖木兒)와 차간 테무르(察罕帖木兒), 李思齊 등으로 하여금 홍군의 봉기에 대해 1351년, 뒤늦게 진압작전을 시행하였다. 중앙의 원군을 지휘한 퉁토는 徐州를 공격하여 회복하였으며, 다시바투르는 襄陽을 점령하였고, 차간 테무르와 이사제는 山西방면에서 농민봉기군을 공격하였다. 1353년(지정 13) 張士誠이 봉기하여 泰州, 高郵를 점령하고 大周를 건국하자 퉁토가 고우를 공격하여 장사성을 압박하는 등 군사적 우위를 점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권력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져 순제가 퉁토의 병권을 박탈하여 진압군의 사기가 저해되었다.

톉토가 제거된 이후 하남행성평장정사 차간 테무르는 홍군토벌에 대한 공로를 바탕으로 중앙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다시바투르의 아들 볼로 테무르 역시 홍군토벌의 군공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1362년(지정 22)에 차간 테무르가 산동에

15) 周繼中, 「元代河南江北行省的屯田」, 『安徽史學』 1984-5期, 13~14쪽.

근거하던 田豊, 王士誠에게 살해되자 차간 테무르의 아들 쿠케 테무르(擴廓帖木兒)가 군권을 이어받아 산서지방을 거점으로 산둥, 하남, 섬서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서쪽의 쿠케 테무르와 동쪽의 볼로 테무르는 홍군과 강남의 한인군웅에 대한 군사작전보다 상호간 세력다툼 및 중앙 황실과 연결된 정치적 입장의 반목으로 내부분열 중이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순제와 황태자 아유시리다라(愛猷識理達臘)의 대립이 격렬하여 먼저 황태자가 쿠케 테무르와 연결되자 순제는 볼로 테무르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쿠케 테무르와 볼로 테무르의 대립은 1364년(지정 24) 볼로 테무르가 병력을 이끌고 대도에 들어가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황태자파의 반간책략과 순제의 미온적 태도로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1365년(지정 25) 쿠케 테무르가 제도의 군마를 총괄하게 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¹⁶⁾

병권을 장악한 쿠케 테무르는 이사제를 비롯한 군사세력을 동원하여 한인군웅에 대한 토벌을 전개하였지만, 개별 군사세력이 군령을 받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 쿠케 테무르의 토벌작전은 실패하였다. 이에 순제는 군사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황태자가 大撫軍院使로서 병권을 총괄하도록 했다. 비록 중앙에서 권력다툼은 일정하게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원의 주요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이 일원적으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¹⁷⁾

이 과정에서 원군은 홍군에 대한 진압은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었지만, 강남이남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한인군웅들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들이 군사적으로 체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내부분열 및 군사충돌로 인하여 자체적인 군사력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¹⁸⁾ 원의 권력다툼은 원 중심 국제 질서에서 자신의 왕위가 언제든 교체될 수 있음을 인지한 고려의

16) 『원사』권46, 순제 24년 4월.

17) 『원사』권47, 순제 27년 8월 갑인

18)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32~34쪽.

공민왕이 한인 군웅세력과 교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19)

〈표 1〉 홍무제의 주요 군사활동

시 기	내 용
1352년(지정12)	廓子興 부대 투신
1353년(지정13)	定遠 공략, 滁州 함락
1354년(지정14)	滁州 웅거
1355년(지정15)	和州 공략, 곽자홍 사망이후 곽자홍 군단의 군령권 총괄, 太平 공략
1356년(지정16)	集慶 공략하고 應天府로 개칭, 徐達로 하여금 鎮江 공략케 함
1357년(지정17)	長興, 常州, 寧國, 江陰, 常熟, 徽州, 池州, 揚州 점령
1358년(지정18)	婺州 공략하고 寧越府로 개칭
1359년(지정19)	徐壽輝 군대와 일전(潛山), 諸暨, 衢州, 處州 공략
1360년(지정20)	陳友諒 군대와 일전(太平 회복)
1361년(지정21)	진우량 정벌전쟁 시작
1362년(지정22)	진우량 부장 胡廷瑞 항복
1363년(지정23)	진우량 정벌전쟁 승리
1364년(지정24)	주원장이 吳王 즉위
1365년(지정25)	대장군 徐達의 장사성 정벌전쟁 시작
1366년(지정26)	장사성 정벌전쟁
1367년(오 원년)	장사성 정벌전쟁 승리, 방국진 정벌, 征虜大將軍 徐達의 북벌전쟁 시작 胡廷瑞의 福建 정벌전쟁, 楊璟의 廣西 정벌전쟁
1368년(홍무 원년)	명 건국, 황제 등극, 湯和의 福建·廣東 평정, 서달의 大都점령
1369년(홍무 2)	元將 李士際 항복, 복원군대의 大同공격을 李文忠이 퇴패시킴
1370년(홍무 3)	서달·이문충의 北征
1371년(홍무 4)	탕화 廖永忠의 西川정벌전쟁, 傅友德의 蜀 정벌전쟁, 원 平章 劉益 투항
1372년(홍무 5)	정로대장군 서달의 北征, 鄧愈의 吐蕃 정벌전쟁
1373년(홍무 6)	쿠케 테무르의 大同 공격과 서달의 방어
1374년(홍무 7)	이문충·藍玉의 北元전쟁
1377년(홍무 10)	秦·晋·燕王府의 護衛에 羽林 등 衛軍 添設
1380년(홍무 13)	胡惟庸의 獄, 中書省 폐지, 大都督府를 五軍都督府로 개편
1381년(홍무 14)	부우덕·남옥·沐英의 雲南 정벌과 平定
1382년(홍무 15)	남옥·목영의 大理 점령
1383년(홍무 16)	征南군대의 복귀
1387년(홍무 20)	풍승·부우덕·남옥의 요동 정벌(納哈出 투항)
1390년(홍무 23)	晉王·燕王·齊王의 北元 정벌
1393년(홍무 26)	藍玉의 獄
1395년(홍무 28)	『皇明祖訓條章』 반포

* 전거 : 『명태조실록』

19)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64, 2007. 215쪽.

이상과 같은 원말 시대상황에서 주원장은 처음 곽자홍 부대에 투신한 이후 명 건국에 이르는 동안 다양한 군사경험을 하게 된다. 홍무제로 등극하기 이전까지 주원장의 군사활동 및 경험은 그의 군사인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역 중심으로 集慶전투, 陳友諒 정벌전쟁, 張士誠 정벌전쟁, 閩廣 정벌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⁰⁾ 이들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홍무제의 군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해 중점사항을 정리한다.

송 건국 이후 홍군에 대한 원군의 공격이 집중되자 원과 홍군은 치열한 전투를 치른 반면, 곽자홍집단의 주원장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1355년(지정 15) 곽자홍 사망 이후 곽자홍의 군사력을 흡수하고 1356년(지정 16) 集慶을 확보하고 應天府로 개칭했다. 이 시기 곽자홍 사망 이후 송은 곽자홍집단을 和州都元帥府로 삼고 도원수 郭天敘, 부원수 張天祐, 주원장을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구성했다. 도원수 곽천서가 존재했지만, 가장 강력한 병력을 보유하고 유능한 무장을 거느린 주원장이 주도적으로 군사력을 장악했다.

주원장은 적극적으로 군사지휘능력이 있는 무장을 유입하여 徐達, 湯和, 周德興, 郭興, 郭英, 張龍, 張溫, 張興, 顧時, 陳德, 王志, 唐勝宗, 吳良, 吳禎, 費聚, 唐鐸, 陸仲亨, 鄭遇春, 曹震, 張翼, 丁德興, 孫興祖, 陳桓, 孫恪, 謝成, 李新, 何福, 邵榮, 耿君用, 耿炳文, 李夢庚, 郁新, 郭景祥, 胡泉, 詹永亨 등 鐘離시절부터 함께 한 무장이 있을 뿐더러 常遇春, 胡大海, 繆大亨, 馮國用, 馮國勝(馮勝), 沐英, 李文忠, 朱文正, 廖永安, 廖永忠, 俞通海, 鄧愈, 藍玉 등 무장을 추가로 유입했다. 뿐만 아니라 李善長, 葉琛, 章溢, 劉基를 비롯한 행정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대외적 군사충돌을 내부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원말 혼란기에 주원장은 점진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하면서 강남 한인 지주를 포용

20)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31~85쪽.

하여 국가체계를 갖추는 원동력으로 활용했다.²¹⁾ 한인 지주세력을 포용한 점은 단순히 이들이 가진 경제력을 흡수한 점뿐만 아니라 홍군의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이 갖춘 의병조직을 군사력으로 끌어들이는 점과 효과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군수체계와 각종 군정체계를 한인 지주들의 능력과 지식에서 유도한 점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1352년(지정 12) 주원장은 定遠縣의 土豪출신으로 濠州를 중심으로 웅거하던 곽자홍 부대에 들어갔다. 주도면밀한 성격과 재능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은 단기간에 자신의 독립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²²⁾ 주원장이 곽자홍부대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동안, 송 홍군은 원의 적극적인 진압작전으로 패전과 승전을 거듭하며 關先生, 破頭潘, 馮長舅, 沙劉二, 王士誠, 白不信, 大刀敖, 李喜喜 등이 군대를 분산시켜 산서, 섬서, 요동 등지로 이동했다. 송 홍군이 원군과 접전을 벌이는 동안 그 남쪽의 徐壽輝, 陳友諒, 張士誠, 方國珍 등이 상호 세력충돌 과정을 거쳤다.

주원장은 집경을 근거지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인군웅들과 경쟁하였다. 1357년(지정 17) 주원장은 長興, 常州, 寧國, 江陰, 常熟, 徽州, 池州, 揚州 등 응천부 주변지역을 점령하여 유력 군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비록 응천부 주변지역을 근거지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전란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군수 및 병력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확장된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군사활동에 필요한 糧草를 납부하도록 하였던 寨糧을 폐지하고 군민들을 보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둔전을 시행하는 등 군수지원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²³⁾ 1358년(지정 18) 주원장은 元帥 康茂才를 營田使兼帳前總制

21) 전순동, 『명왕조성립사연구』 도서출판 개신, 55~94쪽.

22) 『명태조실록』권2, 을미년 정월 무인.

23) 『명태조실록』권8, 경자년 윤5월 갑신. 주원장은 각 군현의 체량을 폐지했다. 체량을 납부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僉院 胡大海가 아뢰자 민심의 안정과 둔전의 시

로 임명하여 둔전을 조성하도록 했다.²⁴⁾

둔전뿐만 아니라 엄격한 군기를 강조하여 군사적 승리 못지않게 점령지에 대한 안정화정책을 강조했다. 1359년(지정 19) 浙東지역을 확보한 주원장은 휘하 장수들에게 천하를 평정하려면 반드시 仁義를 강구해야지 군사력에만 의존해서는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백성들을 최대한 위무하여 撫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 점령한 지역에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경계했다. 즉, 자신의 군대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여 민심을 얻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²⁵⁾ 주원장이 군용으로 등장하는 초기에 구체적인 군민대책 및 군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음에 비하여 다른 군웅들은 혼란기의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집경을 근거지로 세력을 확대하던 주원장은 군사적으로 송 홍군이 북쪽에서 원군과 대치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돌이 없었지만, 서쪽의 진우량, 동쪽의 장사성, 동남쪽의 방국진, 남쪽의 關, 廣西·廣東 등과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지리적,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위협세력이었던 진우량 세력의 정벌을 우선적이라 판단하고 진우량의 太平공격을 기회로 전면전을 감행하였다. 1360년부터 4년여 동안 진행된 진우량 정벌전쟁은 주원장이 경험한 가장 힘든 전쟁으로 당시 진우량은 한인군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지리적으로 장강의 상류에서 공세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치루었다. 그러나 진우량의 압도적인 수군을 제압하면서 주원장은 한인군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진우량을 제압한 주원장은 당시 군사형세를 분석하고 하북의 불로 테무르, 하남의 쿠케 테무르, 關中의 이사제와 張良弼 등 원

행을 위한 조치로 채량을 폐지했다.

24) 『명태조실록』권6, 무술년 2월 을해.

25) 『명태조실록』권7, 을해년 정월 을사. “仁義足以得天下而威武不足以服人心 夫克城雖以武而安民必以仁 吾師比入建康秋毫無犯故一舉而遂定”

세력이 존재하지만 군율이 엄격하지 못하거나 군사력이 강하지 못하거나 지리적으로 곤란한 점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²⁶⁾ 이에 비해 서천의 명옥진 세력은 고립적인 위치라 판단하고, 장강하류의 염전을 바탕으로 세력을 구축한 장사성과 일전을 겨루었다.²⁷⁾ 장사성은 私鹽상인출신으로 송의 홍군과는 성격이 달랐다. 최하층이었던 鹽丁을 주축으로 봉기한 장사성은 신앙적인 구호없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반감을 부추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주로 지주계층이 호응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전개되어 한인군웅이었지만, 원에 대한 반감은 거의 없었다. 이는 주원장과의 군사적 대립관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원에 투항하고, 원은 장사성을 통해 대도에 필요한 식량을 지원받았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원의 太尉로 임명된 장사성은 江浙과 淮南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²⁸⁾ 주원장과 장사성의 군사적 충돌은 1356년(지정 16) 양쪽이 경계를 이웃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장사성이 1363년(지정 23) 오왕을 칭하고 세력을 강화하자²⁹⁾ 1365년(지정 26) 장사성 정벌전쟁을 시작하여 1367년(오 원년) 장사성을 정벌한 뒤 연이어 방국진을 3개월만에 정벌함으로써 유력한 세력을 모두 정벌하여 세력권에 두었다.

1367년(오 원년) 9월에 주원장은 천하의 형세를 분석하여 자신이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을 점령하여 본격적인 南征 北伐을 시행하고자 했다. 당시 군사적으로 원의 세력이 여전히 하남

26) 『명태조실록』 권14, 갑진년 4월 갑오.

27) 『皇明詔令』卷1, 太祖高皇帝上, 討張士誠令. 「토장사성영」에서 주원장은 자신이 거병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전란이 일어나자 흉도를 모아 바다의 섬을 요충으로 삼아 의지한 죄, 원에 거짓 항복하고 관리를 살해한 죄, 왕을 참칭한 죄, 절강성을 침입하여 다시 원에 항복한 죄, 원의 승상 다스 데무르(達識帖木兒)와 모의한 죄, 錢糧을 원에 보낸 죄, 원의 관리를 함부로 죽인 죄, 백성을 함부로 죽인 죄 등 장사성의 죄상을 천명하여 자신의 거병이 정당하였음을 강조하였다.

28) 『명태조실록』 권16, 을사년 2월 병오.

29) 『명태조실록』 권13, 계묘년 9월.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천에 웅거한 夏國의 明昇, 운남의 원세력이었던 梁王, 원에 우호적이었던 복건의 陳友定 등이 있었다. 서달을 비롯한 군사지휘관을 남정북벌군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전방위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한 주원장은 1368년(홍무 원년) 대명의 건국을 천하에 반포했다.

명 건국 이후 홍무제의 주요 전역을 살펴보면 山東전쟁, 河南전쟁, 河北·大都전쟁, 山西전쟁, 陝甘전쟁, 北元정벌, 遼東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⁰⁾ 홍무제의 원 정벌전쟁은 명의 건국이 가지는 정통성문제까지 연결되었다.³¹⁾

홍무제는 서달의 북벌군이 대도를 점령하자 신속하게 복원을 추격하여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한편으로 요동에 잔존한 복원세력의 축출작업을 전개했다. 1371년(홍무 4) 遼陽에 遼東衛를 설치하여 명군의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뒤이어 定遼都衛指揮使司를 설치하여 당시까지 점령한 요동의 여러 지역을 총괄하였다.³²⁾ 당시 요동의 복원세력은 군벌성격을 가졌으며, 복원정부에 절대적인 복속관계는 없었다. 홍무제는 요동에 대한 기본 군사정책으로 강력한 정벌과 함께 광범위한 초무정책을 병행했다.

특히, 서북쪽의 쿠케 테무르가 사망한 뒤 홍무제의 주요 군사목적은 복원과 연결된 요동지역에 집중되었다. 홍무제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원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고려에 대해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고려·복원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다.³³⁾ 이는 직접적으로 고려에 군마조달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고려의 입경을 금지하는

30)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93~133쪽.

31) 『皇明詔令』卷1, 太祖高皇帝上, 諭中原檄.

32) 『명사』권134, 열전22, 葉旺;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33)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 64, 2007. 217~226쪽.

조치마저 취했다.

응천부에 수도를 둔 상황에서 요동의 변경까지 명의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도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군수지원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북쪽으로 복원 원정군을 파견하고 동쪽으로 대단위 원정군을 파견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이에 홍무제는 정요위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군사압박은 시행하되 대단위 군사활동보다 회유정책을 통해 원 잔존세력을 약화시키고, 고려와 이들 세력간 연대를 단절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회유정책의 바탕에는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 군사정책이 결코 확장위주의 강병책이 아니었음이 존재한다. 홍무제는 因地主義 원칙에 따라 원주민의 자치적인 정치권을 인정하되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요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었다. 홍무제의 강력한 군사적 의지로 명 건국을 전후하여 공세적인 정벌전쟁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원에 대한 북벌군이 원 세력을 漠北지역으로 밀어냈으며, 서북쪽에서 웅거하던 쿠케 테무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쪽으로 변방을 확대하여 평정하였기 때문에 1387년을 기점으로 남은 군사충돌지역은 요동이었다. 요동지역은 나가추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세력이 북원과 연결고리를 맺고 정세가 불안정한 고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되었던 지역이었다.³⁴⁾

홍무제가 본격적으로 요동경략을 위한 군사작전을 시행한 시점은 1387년(홍무 20) 馮勝, 傅友德, 藍玉 등의 북벌군 20만명을 출진시켜 나가추를 압박하였을 때이다.³⁵⁾ 풍승의 군대는 요동의 거점인 大寧을 점령하고, 최대 원 잔존세력이었던 나가추를 추격하여 金山까지 점령하고, 奉集縣에 철령위를 설치했다.³⁶⁾ 홍무제의

34) 나가추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은숙, 「나가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정세」 『명청사연구』 28, 2007을 참조할 것.

35) 『명태조실록』 권180, 홍무 20년 정월 계축.

적극적인 요동경략은 요동지역에서 원 잔존세력의 소멸과 명의 대
여진 회유정책으로 이어졌으며, 고려 및 뒤를 이은 조선과 정치·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³⁷⁾

이상과 같은 원말명초 군사상황에 대해 홍무제는 신생 국가의 군
주라는 점에서 군사력의 강화 및 중앙집권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졌다. 특히, 건국 군주라는 점에서 홍무제는 사회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첫째, 원말 강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농민봉기 및 군웅의 등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엄정한 군대의 확립이 필
요하다고 인식했다. 주원장이 처음 군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한
인군웅이나 원군에 비하여 군대의 부패와 백성침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원장은 한인군웅 가운데 대표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후 명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대명률』, 『武臣大誥』 등을 통해 군
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했다.³⁸⁾

둘째, 농민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들의 농민
수탈을 방지하고, 농민을 철저히 토지를 매개로 한 지역단위 공동
체에 고정시켜 신생 명나라의 통치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호와 군호를 철저히 분리시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
역 및 군사체계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특히, 군역을 회피하여 도
망하는 경향이 명 건국 이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호를
세습화시켰다. 1383년(홍무 16) 홍무제는 병부에 諭示하여 國家에
서 백성들로 하여금 衛所의 군사로 삼은 것은 고금의 진리이므로

36) 『명태조실록』권182, 홍무 20년 6월 정유; 계묘; 정미; 권189, 홍무 21년 3월 신축.

37)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13~22쪽.

38) 王振安, 「從大明律的制定看朱元璋的法制思想」, 『新疆社科論壇』, 1991-6기; 余洪波, 「明朝大誥頒行動機新議」, 『河南社會科學』, 10卷 2期, 2001; 李洪文, 楊小變, 「明太祖重典治吏的措施探究」, 『邵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 5卷 2期, 2006 등 참조.

군사의 도망과 어리석은 백성이 이를 숨겨주지 말도록 유시했다.³⁹⁾ 이러한 홍무제의 군사인식은 통치구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백성들을 토지에 연결시켜 징세와 역 부과의 근본으로 삼았던 점과 일맥상통한다.

넷째, 국가의 군사통치는 철저히 황제에게 귀속되는 군사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홍무제는 원말의 사회혼란 및 홍군에 대한 군사대응에서 황제권에서 벗어난 군벌세력이 독자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일원적인 황제권에 직속되지 않은 군사력은 반란세력의 군사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홍무제는 군사활동에 가담하면서부터 철저히 자신의 영향력 하에 군사력을 두는 경향을 보였으며, 명 건국 이후 이를 제도화하였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몽골의 군사적 위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군사정벌을 시행하였지만, 다른 주변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여 명의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명 중심 국제질서를 형성하면서 건국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군사력은 자칫 명의 통치체제를 위협할 수 있었다. 주변국과 잦은 군사충돌은 이에 따른 군비와 병력의 조달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행정체계는 백성들의 불만으로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원말 사회혼란과 정치변동의 과정을 거치며 유력 한인군용으로 성장한 홍무제는 명을 건국하면서 전통 중화주의를 주장하고 일원적인 황제중심의 군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원대의 군제를 개혁하고 건국과정에서 성장한 무장세력을 황제의 통치체계에 흡수함과 동시에 무관우대정책을 시행했다. 1376년(홍무 9) 홍무제는 중서성으로 하여금 무관의 誥勅을 定給하는 제도를

39) 『명태조실록』권153, 홍무 16년 4월 무자.

마련했다. 特授陞除, 已入仕及陞除로 구분하여 무관에게 임명장에 해당하는 고직을 발급하는데, 대도독부, 중서성, 병부, 한림원, 中書舍人, 臺官, 司文監 등 관련 관부에서 엄격하게 勘合, 校閱, 磨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⁴⁰⁾ 이는 임명장의 발급에 황제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무관들이 명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황제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으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인식은 무관자손의 서용을 강조한 점에서도 확인된다.⁴¹⁾

명초 홍무제는 원말 군사반란과 농민반란 등을 제압하고, 북원과 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병책을 주장하면서도 일면 모든 군사력은 철저하게 황제중심으로 편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지향하여 건국과정에서 강병책은 필요하였지만, 건국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대외적인 군사충돌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3. 홍무제의 군제정비와 통치구상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홍무제의 군사경험과 활동,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군제정비과정을 정리한다. 원말 농민봉기군의 지휘관으로 성장한 주원장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며 군제를 확립했다. 1364년(지정 24) 확대되는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部伍法을 만들었다.⁴²⁾ 편제를 指揮, 千戶, 百戶, 總旗, 小旗로 일원화시키고, 병사를 기준으로 5,000명에 지휘, 1,000명에 천호, 100명에 백호, 50명에 충기, 10명에 소기를 두었다. 5개의

40) 『명태조실록』 권105, 홍무 9년 4월 계묘.

41) 『명태조실록』 권106, 홍무 9년 6월 임자.

42) 『명태조실록』 권14, 4월 임신.

소기가 모여 총기를, 2개의 총기가 모여 백호를, 10개의 백호가 모여 천호를, 5개의 천호가 모여 위를 구성하는 형식이었으며, 몇 개의 위와 소를 모아 중요 군사거점에 군구개념의 都指揮使司를 만들었다.

주원장은 형식적이었지만 송 용봉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오왕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뜻을 건국하고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제정비를 추진하였다. 주원장은 오왕에 즉위한 뒤 한 동안 명령을 공포하며 “黃帝聖旨 吳王命旨”라는 명의를 쓰고, 百司의 官屬을 설치하면서 실질적인 명대 관제는 시작됐다.⁴³⁾ 오왕 즉위초기라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원대의 관제를 모방하여 관제가 정해졌는데, 中書省과 參議府, 都鎮撫司 등의 관서가 대상이었다. 이때 정해진 관제는 다음과 같다.

〈표 2〉 오 원년 관제(정월기준)

구분	中書省	參議府	都鎮撫司	考功所
正1品	左右相國			
從1品	平章政事			
正2品	左右丞			
從2品	參知政事			
正3品		參議		
從3品		參軍, 斷事官		
正5品	左右司郎中		都鎮撫	
正6品	員外郎			
正7品	都事, 檢校	斷事經歷		考功郎
從7品	照磨, 管句			
正8品		知事		

* 전거 : 『명태조실록』권14.

이어 다음 달에 大都督府 등 군사체계에 관련된 관제를 제정했다.⁴⁴⁾ 이때의 관제는 다음과 같다.

43) 『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정월 갑진.

44) 『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2월 무진.

〈표 3〉 오 원년 관제(2월기준)

구분	大都督府	行省	理問所	都鎮撫司	金吾侍衛 親軍都護府	統軍元帥府	各衛親軍指 揮使司	千戶所	萬戶府
從1品	大都督	平章政事							
正2品	左右都督	左右丞							
從2品	同知都督	參知政事			都護				
正3品	副都督					元帥	指揮使		
從3品	僉都督					同知元帥	同知指揮		
正4品			正理問			副使	副使		正萬戶
從4品				都鎮撫					副萬戶
正5品			副理問		經歷			正千戶	
從5品	經歷	郎中		副鎮撫				副千戶	
正6品								鎮撫百戶	
從6品		員外郎							
正7品						經歷	經歷		
從7品	都事	都事檢校			知事				
從8品		照磨 句	知事	知事	照磨	知事	知事		知事
正9品						照磨	照磨		照磨

* 전거 : 『명태조실록』권14.

주원장은 1367년(오 원년)에 大都督府 등 아문의 관제를 제정했다. 45) 대도독부는 大都督(종1품), 左右都督(정2품), 同知都督(종2품), 副都督(정3품), 僉都督(종3품), 經歷(종5품), 都事(종7품)을, 各行省에는 平章政事(종1품), 左右丞(정2품), 參知政事(종2품), 郎中(종5품), 員外郎(종6품), 都事·檢校(종7품), 照磨·管句(종8품), 理問所의 正理問(정4품), 副理問(정5품), 知事(종8품), 都鎮撫司의 都鎮撫(종4품), 副鎮撫(종5품), 知事(종8품), 金吾侍衛 親軍都護府의 都護(종2품), 經歷(정6품), 知事(종7품), 照磨(종8품), 統軍元帥府의 元帥(정3품), 同知元帥(종3품), 副使(정4품), 經歷(정7품), 知事(종8품), 照磨(정9품), 各衛 親軍指揮使司의 指揮使(정3품), 同知指揮(종3품), 副使(정4품), 經歷(정7품), 知事(종8품), 照磨(정9품), 千戶所의 正千戶(정5품), 副千戶(종5품), 鎮撫·百戶(정6품), 各 萬戶府의 正萬戶(정4품), 副萬戶(종4품), 知事(종8품), 照磨(정9품) 등이었다.

45) 『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3월 무진.

오 원년에 제정된 편제는 정1품 아문의 중서성을 중심으로 통치 구조를 체계화한 것으로 무관직제는 중서성보다 한 단계 낮은 종1품 아문으로 구성되었다.⁴⁶⁾ 이 단계의 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원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통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원적인 군사편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오 원년 편제는 다음 해 명 건국과 동시에 황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비록 황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원정벌, 요동경략, 토번정벌, 민·광정벌 등 변방에서 다양한 군사활동이 전개되거나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작전, 군사동원, 군수보급 등이 시급하였다.

대도독부의 편제뿐만 아니라 오 원년 3월에 武德衛, 龍驤衛, 豹韜衛, 飛熊衛, 威武衛, 廣武衛, 興武衛, 英武衛, 鷹揚衛, 驍騎衛, 神武衛, 雄武衛, 鳳翔衛, 天策衛, 振武衛, 宣武衛, 羽林衛 등 17개 親軍指揮使司를 설치했다.⁴⁷⁾ 경사를 중심으로 한 황제권의 직접 수호 군사집단으로 친군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군사명령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상으로 대도독부가 친군위를 통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독부를 비롯한 군사체계가 황제에게 종속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명 건국 이후 중서성 중심의 국정운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육부의 구체적인 직장을 제정한 것은 1372년(홍무 5)이었다.⁴⁸⁾ 이때 제정된 병부의 직장은 천하의 軍衛, 武選, 廩驛, 甲仗의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總部, 職方部, 駕部 등 3개의 屬司를 보유했다. 總部는 軍務, 符驗, 巡檢 등의 임무를 관장하였으며, 職方部는 城池, 郵置, 烽堠, 四夷歸化 등을, 駕部는 鹵簿, 馬政, 車輅, 驛傳, 兵器 등을 관장했다. 다음 해에 육부와 諸司 관원의 정액이 정해졌는데, 병부는 尚書 2명, 侍郎 2명 그리고 속사의 3개 部에 매부마다 郎中,

46) 『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3월 무진.

47) 『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3월 경오.

48) 『명태조실록』권74, 홍무 5년 6월 계사.

員外郎이 각 1명, 主事 각 2명 등 모두 16명의 관원이 두어졌다.⁴⁹⁾

기본 편제 이외에 1376년(홍무 9) 서북쪽의 복원세력이었던 쿠케 테무르가 사망하고 일단의 군사위협이 제거되자 보다 안정적인 통치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전국의 行中書省을 폐지하고 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여 황제에게 일원화시킴과 동시에 군령 및 행정명령체계를 뒷받침하는 驛傳체계를 병부로 하여금 정비하게 했다. 揚州府驛을 廣陵驛으로 鎮江府驛을 京口驛으로 개칭하는 등 232개의 전국 역전체계를 정비했다.⁵⁰⁾ 이는 군사정책의 중요한 측면으로 전국의 통치를 민호와 군호로 구분하되 이의 유기적인 결합을 의도한 것이다.

오 원년에 편성된 군제는 명 건국 이후 지속되었지만, 호유용의 옥사를 계기로 전면 개편되었다. 1380년(홍무 13)에 대대적인 官制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증서성을 폐지하고 육부의 직능을 강화하고, 大都督府를 五軍都督府로 개편함으로써 모든 서무를 육부를 거쳐 곧바로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군사력을 5군으로 전환시켜 상호 견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⁵¹⁾ 기존에 증서성의 통제를 받아 군정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던 병부의 직능을 강화시켰다.

〈표 4〉 홍무 13년 병부의 관리 정원현황

구분	屬司	官員	吏典
兵部		尙書, 侍郎 各1명	
	總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職方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駕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庫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承發典吏 1명, 架閣兼勾銷典吏 1명

* 전거 : 『명태조실록』권130, 홍무 13년 3월 무신.

49) 『명태조실록』권83, 홍무 6년 6월 신미.

50) 『명태조실록』권105, 홍무 9년 4월 임진.

51) 『명태조실록』권129, 홍무 13년 1월 계묘.

이때 육부의 직능을 강화하면서 육부의 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는데, 육부의 관리는 모두 548명으로 尚書 6명, 侍郎 7명, 郎中 24명, 員外郎 24명, 主事 44명 등 관원 105명이었다. 唐制에 비하여 32명이 감축된 것이며, 건국 초기에 비하여 71명이 줄어든 수준이었다. 아전은 都吏 24명, 令史 134명, 典吏 285명 등 443명으로 唐制에 비하여 126명이 감축된 것이며, 건국 초기에 비하여 345명이 줄어든 수준이었다. 홍무 13년에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중심의 통치체계를 정립하면서 관리의 숫자를 줄인 것은 명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통치체제의 정비과정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체계화되었음을 반영한다. 이 가운데 병부는 상서, 시랑 각 1명, 총부 10명, 직방부 10명, 가부 10명, 고부 12명 등 총 44명의 관리가 두어졌다.⁵²⁾

원래 대도독부는 1364년 주원장이 자신의 군사세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편제시킨 군사조직이었다.⁵³⁾ 이때 변화된 관제는 중서성의 모든 직무를 육부로 나누어 분장시킴과 동시에 무엇보다 군사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변방 각 지역에서 주변 세력에 대한 정벌활동이 진행중이었으며, 실제 방대한 군사력에 대한 지휘권이 무장세력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일원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병력을 보유하고 지휘하던 무장세력은 공신세력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일원적으로 통제하되, 호유용의 옥사⁵⁴⁾처럼 중앙에서 대도독부를 장악한 세력이 황제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앙의 군사통제권을 5부로 나누고 이를 황제에게 직속시켰던 것이다. 오군도독부가 처음

52) 『명태조실록』권130, 홍무 13년 3월 무신.

53) 『명태조실록』권14, 3월 무진. 이때 편제된 大都督府의 군제는 다음과 같다. 大都督(從一品), 左右都督(正二品), 同知都督(從二品), 副都督(正三品), 僉都督(從三品), 經歷(從五品), 都事(從七品).

54) 『명태조실록』권129, 홍무 13년 1월 갑오.

설치되었을 때 직무분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明代 五軍都督府 統屬현황(홍무 13년 기준)

구분	統屬(在京)	統屬(在外)
左軍都督府	驍騎衛, 左水軍衛, 左留守衛, 左龍虎衛, 英武衛	山東都司, 遼東都司, 浙江都司, 廣東都司와 그 관할 衛所
右軍都督府	虎賁衛, 右水軍衛, 右留守衛, 右武德衛, 廣武衛	陝西都司, 四川都司, 江西都司와 그 관할 衛所
中軍都督府	神策衛, 廣洋衛, 留守衛, 中應天衛, 和陽衛	蘇州衛, 太倉衛, 鎮海衛, 揚州衛, 高郵衛, 大河衛, 淮安衛, 沂州衛, 風陽左衛, 風陽右衛, 風陽中衛, 皇陵衛, 長淮衛, 懷遠衛, 留守中衛, 留守左衛, 徐州衛, 滁州千戶所, 徽州千戶所, 六安千戶所, 廬州千戶所, 鎮江千戶所, 安丰千戶所, 信陽千戶所, 宿州千戶所, 洪塘千戶所, 河南都司와 그 관할 衛所
前軍都督府	天策衛, 豹韜衛, 龍驤衛, 飛雄衛, 龍江衛	湖廣都司, 福建都司, 廣西都司, 福建行都司와 그 관할 衛所
後軍都督府	鷹揚衛, 江陰衛, 興武衛, 橫海衛, 蒙古左衛, 蒙古右衛	北平都司, 山西都司, 山西行都司와 그 관할 衛所

* 전거 : 『명태조실록』권129, 홍무 13년 1월 계묘.

위 표와 같이 명 전체 영역을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한 도독부체제는 재경과 재외를 구분함으로써 오군도독부의 군사적 역할이 중앙과 지방에 걸쳐 광범위하게 걸쳐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좌군, 우군, 후군도독부는 북방의 몽골 및 주요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비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반하여 중군, 전군은 내지의 주요 거점과 강남의 안정적인 통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중앙의 오군도독부와 지방의 각 위소를 중심으로 군제는 계속 확대되어 1392년(홍무 23)에 전국에 17개 도지휘사사, 329개 위, 65개 守禦千戶所가 설치되었으며, 경위의 병력만 120여만명이었다.⁵⁵⁾ 이와 같은 방대한 상비군을 보유한다는 점은 대외적으로 외침이나 정벌에 활용되지만, 대내적으로 절대 황제권에 저항하는 각종 모반사건, 농민반란 진압, 치안유지, 특무

55) 『명태조실록』권205, 홍무 23년 10월 무자.

정치 등에 활용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비군을 유지하는 비용측면이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인물은 劉基였다. 유기는 중국 고대 兵制를 참고하여 명대 고유의 軍制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衛所制度였다.

유기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이를 절충한 형식의 위소제도를 만들었다. 위소제도는 전국 단위의 皆兵으로 유사시 복무와 평시 본업을 병행할 수 있고 소질과 출신이 보장되는 징병제의 장점과 직업군인으로 오랜 훈련기간과 높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병제의 장점을 모은 것으로 전투역량과 생산역량을 병합한 형태였다.

1370년(홍무 3)에 杭州, 江西, 燕山, 青州衛를 都衛로 승격시키고, 뒤이어 河南, 西安, 太原, 武昌도 都衛로 승격시켰다. 군대와 走馬를 조발하는 寶金符, 符牌를 통해 전력을 운용할 수 있었으며, 軍機文書는 都督府, 中書省을 제외하고 함부로 아될 수 없었다. 1372년(홍무 5)에 親王護衛指揮使司가 설치되고 매 府마다 護衛 3개가 두어졌으며, 각 衛는 左, 右, 中, 前, 後所를 두었다. 1374년(홍무 7) 兵衛를 새로 정하여 정벌 등으로 병력을 조발하면 諸將이 통솔하였다가 일이 평정되면 각 위로 다시 배속되었다. 다음 해에 在京의 留守都衛를 留守衛指揮使司로 개편하고, 在外의 都衛를 都指揮使司로 개편하였는데 北平, 陝西, 山西, 浙江, 江西, 山東, 四川, 福建, 湖廣, 廣東, 廣西, 遼東, 河南 등 13개였으며, 甘州, 大同 등 行都指揮使司 2개였다.

위소는 京師에서 지방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설치되었으며, 중앙은 五軍都督府가, 지방은 각 都司가 통솔했다.⁵⁶⁾ 홍무연간의 위소 병력은 주원장이 처음 봉기할 때 병력(從征), 통일과정에서 복속된 병력(歸附), 형벌로서 복무하는 병력(謫發), 징발된 병력 등으로

56) 『명사』권89, 兵志65, 兵1.

이들은 모두 세습되었다. 명대 군인은 軍籍에 올라 일반 백성들의 民籍과 달리 신분·벌률·경제적으로 衛所에 소속되어 관리되었다. 군인 본인은 正軍, 자제는 餘丁(軍餘)이며, 장교의 자제는 舍人이었다.

30여 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란은 전국을 황폐화시켰다. 명 건국 이후에도 각지에서 정벌전쟁이 벌어졌으며, 농민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인한 황폐화와 자연재해는 신흥 명 제국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저하된 생산력은 감소한 노동력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먼저 인구정책, 농업정책, 조세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먼저 인구정책은 土農工商의 4業 이외에 逸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를 농지와 연계시켜 정착시켰다. 이러한 정착화과정은 里甲制로 표현되었으며, 생산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조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명 건국 이전 오왕으로 즉위한 홍무제는 1367년(오 원년)에 기존 세력권의 徐, 宿, 濠, 泗, 壽, 邳, 東海, 襄陽, 安陸 등의 군현과 이후 확장된 지역은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⁵⁷⁾

명 건국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인 군사편제를 체계화시켰으며, 잔존하는 복원세력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명의 변방 방비 체계를 확립시켰다. 홍무제의 군사정책이 크게 전환된 시점은 유력 군웅세력에서 명의 건국으로 황제체제를 갖춘 1368년(홍무 1), 호유용의 옥을 계기로 중서성 폐지와 육부체계의 확립이 시행된 1380년(홍무 13), 유력한 복원세력이었던 요동의 나가추가 투항함으로써 요동경략이 본격화된 1387년(홍무 20) 등이었다. 이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홍무제의 군사정책은 무장세력 중심의 지배체제기, 제국으로써 일원적인 군사체계 정립기, 황제중심의 군사체계

57) 『명태조실록』권23, 오 원년 5월.

강화기, 명 중심 국제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체제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홍무제는 복원세력의 제압과 군사반란의 대비를 위해 역대의 옛 제도를 따라 군정권을 일반 행정분야와 분리시켰다. 즉 五軍都督府를 통해 중앙의 병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병권을 흡수함으로써 재상의 권력을 분할하고, 군사력을 황제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홍무제의 국가통치이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황제중심의 전제권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홍무제의 군정권 직접 통제는 송대에 樞密院을 강화하여 재상권과 분리시켜 황제의 전제권력을 강화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홍무제는 무신들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여 황제중심의 일원적인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1371년(홍무 4) 12월에 중서성으로 하여금 軍官, 軍士에 대한 優給의 예를 정하도록 했다.⁵⁸⁾ 예를 들면 전사한 軍職에 대해 승습할 자제가 없이 부모나 처가 있거나 어린 자제가 있다면 봉록을 모두 지급하되 3년 이후부터는 반으로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이다.

홍무제의 군사체제 정비과정은 실질적으로 1390년대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제사직장』을 반포하면서 자신의 통치구상에 입각한 통치체계를 편제하였다. 1393년(홍무 26) 3월에 홍무제가 勅命으로 제정하여 內府에서 간행한 『제사직장』은 명초 職官法典으로 명대 說官分職의 制度를 상세히 규정했다.⁵⁹⁾ 『제사직장』은 홍무연간에 편찬되어 이후 『대명회전』으로 종합되기 전까지 명대 行政의 중요법전이자, 職官制度의 기준이 되었다. 『제사직장』은 『唐六典』의 체제를 모방하여 諸司의 職掌을 분류한 것이었다.⁶⁰⁾ 『제사직장』의 편찬에 관련된 중요인물은 예부주사였던 翟善이었으며, 翰林院의

58) 『명태조실록』권70, 홍무 4년 12월 계미.

59) 鞠明庫, 「諸司職掌與明代會典의纂修」 『史學史研究』 2006-2. 53~57쪽.

60) 『명태조실록』권226, 홍무 26년 3월 경오.

儒臣이 참여했다. 명초 軍職衙門의 관원은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표 6〉 흥무연간 軍職衙門의 관원 인원수

衙門	官員
都督府	左都督, 右都督, 都督同知, 都督僉事
留守司	正留守, 副留守, 指揮同知
都指揮司	都指揮使(2), 都指揮同知(2), 都指揮僉事(4)
衛	指揮使(1), 指揮同知(2), 指揮僉事(4), 衛鎮撫(2)
所	正千戶(1), 副千戶(2), 所鎮撫(2), 百戶(10)
儀衛司	儀衛正(1), 儀衛副(2), 典仗(6)

* 전거 : 『諸司職掌』 兵部, 司馬部, 銓選, 官制.

역대 다른 왕조와 비교하면 위 표에 보이듯이, 명대 무직아문의 관원은 상대적으로 군사편제와 함께 체계화되었으며, 군령체계에 해당되는 도독부-도지휘사-위-소로 이어지는 체계뿐만 아니라 유수사, 의위사 등 중앙의 호위체계까지 포함된 점은 의미있는 체계라 할 것이다. 흥무제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방위를 위해 武官들에게 勳錄을 제수하여 우대하였다. 무관은 1품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 上柱國에서 武騎尉의 爵勳을 제수하고, 해마다 俸米를 世祿으로 지급했다. 물론 이러한 무관에 대한 작훈을 관품에 따라 상세히 규정하고 운영한 주체는 이부였다. 뿐만 아니라 무관은 구체적인 資格을 제수했다. 흥무연간 무관의 자격과 給授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 흥무연간 武官資格과 급수

品秩	資格	給授
正1品	左都督, 右都督	初授特進榮祿大夫, 陞授特進光祿大夫
從1品	都督同知	初授榮祿大夫, 陞授光祿大夫
正2品	都督僉事, 正留守, 都指揮使	初授驃騎將軍, 陞授金吾將軍, 加授龍虎將軍
從2品	都指揮同知	初授鎮國將軍, 陞授定國將軍, 加授奉國將軍
正3品	副留守, 都指揮僉事, 各衛指揮使	初授昭勇將軍, 陞授昭毅將軍, 加授昭武將軍
從3品	留守司指揮同知, 各衛指揮同知	初授懷遠將軍, 陞授定遠將軍, 加授安遠將軍
正4品	各衛指揮僉事	初授明威將軍, 陞授宣威將軍, 加授廣威將軍
從4品		初授宣武將軍, 陞授顯武將軍, 加授信武將軍
正5品	儀衛正, 正千戶	初授武德將軍, 陞授武節將軍
從5品	衛鎮撫, 儀衛副, 副千戶	初授武略將軍, 陞授武毅將軍
正6品	典仗, 百戶	初授昭信校尉, 陞授承信校尉
從6品	所鎮撫	初授忠顯校尉, 陞授忠武校尉

* 전거 : 『諸司職掌』 兵部, 司馬部, 銓選, 資格.

흥무연간에 설치된 군사조직은 광역범위는 都司, 留守司였으며, 세부적으로 衛所로 구성됐다. 都司는 17개, 留守司는 1개였으며, 内外의 衛는 329개, 守禦千戶所는 65개였다. 이 가운데 在京에 설치된 위는 金吾前衛, 金吾後衛, 羽林左衛, 羽林右衛, 府軍衛, 府軍左衛, 府軍右衛, 府軍前衛, 府軍後衛, 虎賁左衛, 錦衣衛, 旗手衛 등 12개였다.

군사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중앙부서는 五軍都督府였는데, 이에 소속된 衛所는 다음과 같다.

구분	在京	在外	
		都司	衛·千戶所
左軍都督府	留守左衛 鎮南衛 水軍左衛 驍騎右衛 龍虎衛 英武衛 瀋陽左衛 瀋陽右衛	浙江都司	杭州右衛, 杭州前衛, 台州衛, 寧波衛, 處州衛, 紹興衛, 海寧衛, 昌國衛, 溫州衛, 臨山衛, 松門衛, 金鄉衛, 定海衛, 海門衛, 磐石衛, 觀海衛, 海寧千戶所, 衢州千戶所, 嚴州千戶所, 湖州千戶所
		遼東都司	定遼左衛, 定遼右衛, 定遼中衛, 定遼前衛, 定遼後衛, 鐵嶺衛, 東寧衛, 瀋陽中衛, 海州衛, 蓋州衛, 金州衛, 復州衛, 義州衛, 遼海衛, 三萬衛, 廣寧左屯衛, 廣寧右屯衛, 廣寧前屯衛, 廣寧後屯衛, 廣寧中護衛
		山東都司	青州左護衛, 青州護衛, 兗州護衛, 兗州左護衛, 登州衛, 青州左衛, 萊州衛, 寧海衛, 濟南衛, 平山衛, 德州衛, 樂安千戶所, 膠州千戶所, 諸城千戶所, 滕縣千戶所
右軍都督府	虎賁右衛 留守右衛 水軍右衛 武德衛 廣武衛	雲南都司	雲南左衛, 雲南右衛, 雲南前衛, 大理衛, 楚雄衛, 臨安衛, 景東衛, 曲靖衛, 金齒衛, 洱海衛, 蒙化衛, 馬隆衛, 平夷衛, 越州衛, 六涼衛, 鶴慶千戶所
		貴州都司	貴州衛, 永寧衛, 普定衛, 平越衛, 烏撒衛, 普安衛, 層臺衛, 赤水衛, 威清衛, 興隆衛, 新添衛, 清平衛, 平壩衛, 安莊衛, 龍里衛, 安南衛, 都勻衛, 畢節衛, 黃平千戶所
		四川都司	成都左護衛, 成都右護衛, 成都中護衛, 成都左衛, 成都右衛, 成都前衛, 成都後衛, 成都中衛, 寧川衛, 茂州衛, 建昌衛, 重慶衛, 敘南衛, 荊州衛, 盧州衛, 松藩軍民指揮司, 嚴州衛, 青州千戶所, 保寧千戶所, 威州千戶所, 雅州千戶所, 大渡千戶所
		陝西都司	西安左護衛, 西安右護衛, 西安中護衛, 西安左衛, 西安右衛, 西安前衛, 西安後衛, 華山衛, 泰山衛, 延安衛, 綏德衛, 平涼衛, 慶陽衛, 寧夏衛, 臨洮衛, 鞏昌衛, 西寧衛, 漢中衛, 涼州衛, 莊浪衛, 蘭州衛, 秦州衛, 岷州軍民指揮司, 洮州衛, 河州軍民指揮司, 甘肅衛, 山丹衛, 永昌衛, 鳳翔千戶所, 金州千戶所, 寧夏中護衛, 甘州中護衛, 西河中護衛
		廣西都司	桂林左衛, 桂林右衛, 桂林中衛, 南寧衛, 柳州衛, 馴象衛, 梧州千戶所

中軍 都督 府	留守中衛 神策衛 廣洋衛 應天衛 和陽衛 牧馬千戶所	直隸	揚州衛, 和州衛, 高郵衛, 淮安衛, 鎮海衛, 滁洲衛, 太倉衛, 泗州衛, 壽州衛, 邳州衛, 大河衛, 沂州衛, 金山衛, 新安衛, 蘇州衛, 儀真衛, 徐州衛, 安慶衛, 宿州千戶所
		中軍 留守司	鳳陽右衛, 鳳陽衛, 鳳陽中衛, 皇陵衛, 留守左衛, 留守中衛, 長淮衛, 懷遠衛, 洪唐千戶所
		河南都司	歸德衛, 陳州衛, 弘農衛, 汝寧衛, 潼關衛, 河南衛, 睢陽衛, 宣武衛, 信陽衛, 彰德衛, 武平衛, 南陽衛, 寧國衛, 懷慶衛, 寧山衛, 潁川衛, 安吉衛, 潁上千戶所, 河南左護衛, 河南中護衛, 河南右護衛
前軍 都督 府	天策衛 龍驤衛 豹韜衛 龍江衛 飛熊衛	直隸	九江衛
		湖廣都司	茶陵衛, 武昌衛, 武昌左衛, 黃州衛, 永州衛, 岳州衛, 蕪州衛, 施州衛, 長沙護衛, 辰州衛, 安陸衛, 襄陽衛, 常德衛, 沅州衛, 寶慶衛, 沔陽衛, 長沙衛, 衡州衛, 衢塘衛, 鎮遠衛, 平溪衛, 清浪衛, 偏橋衛, 五開衛, 九溪衛, 荊州左護衛, 荊州中護衛, 靖州衛, 永定衛, 郴州千戶所, 夷陵千戶所, 桂陽千戶所, 德安千戶所, 忠州千戶所, 安福千戶所, 道州千戶所, 大庸千戶所, 天平千戶所, 麻遼千戶所, 枝江千戶所, 武岡千戶所, 崇山千戶所, 長寧千戶所, 武昌左右中三護衛
		福建都司	福州中衛, 福州左衛, 福州右衛, 興化衛, 泉州衛, 漳州衛, 福寧衛, 鎮東衛, 平海衛, 永寧衛, 鎮海衛
		福建 行都司	建寧左衛, 建寧右衛, 建陽衛, 延平衛, 邵武衛, 汀州衛, 將樂千戶所
		江西都司	南昌左衛, 南昌前衛, 袁州衛, 贛州衛, 吉安衛, 饒州千戶所, 安福千戶所, 會昌千戶所, 永新千戶所, 南安千戶所, 建昌千戶所, 撫州千戶所, 鉛山千戶所, 廣信千戶所
		廣東都司	廣州前衛, 廣州左衛, 廣州右衛, 南海衛, 潮州衛, 雷州衛, 海南衛, 清遠衛, 惠州衛, 肇慶衛, 廣州後衛, 程鄉千戶所, 高州千戶所, 廉州千戶所, 萬州千戶所, 儋州千戶所, 崖州千戶所, 南雄千戶所, 韶州千戶所, 德慶千戶所, 新興千戶所, 陽江千戶所, 新會千戶所, 龍州千戶所
後軍 都督 府	橫海衛 鷹揚衛 興武衛 江陰衛 蒙古左衛 蒙古右衛	北平都司	燕山左衛, 燕山右衛, 燕山前衛, 大興左衛, 永清左衛, 永清右衛, 濟州衛, 濟陽衛, 彭城衛, 通州衛, 蘇州衛, 密雲衛, 真定衛, 永平衛, 山海衛, 邊化衛, 居庸關千戶所
		北平 行都司	大寧左衛, 大寧右衛, 大寧中衛, 大寧前衛, 大寧後衛, 會州衛, 營州中護衛, 興州中護衛
		山西都司	太原左衛, 太原右衛, 太原前衛, 振武衛, 平陽衛, 鎮西衛, 潞州衛, 蒲州千戶所, 廣昌千戶所, 沁州千戶所, 寧化千戶所, 鴈門千戶所
		山西 行都司	大同左衛, 大同右衛, 大同前衛, 蔚州衛, 朔州衛 北平三護衛(燕山左護衛, 燕山右護衛, 燕山中護衛) 山西三護衛(太原左護衛, 太原右護衛, 太原中護衛)

* 전거 : 『諸司職掌』兵部職掌, 職方部, 城隍.

『제사직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초 홍무연간 군제 정비는 홍무 말년에 완성되었으며, 이는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명대 지속되었다.

4. 홍무제의 군사정책의 특징과 한계

홍무제의 군사인식은 구체적인 군사정책으로 홍무연간 시행되어 정착되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 군사정책은 이후 동북아의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명대 군사정책의 기본으로 작용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은 전례없이 모든 군사력을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집중시켜 운영된 점, 편제상으로 정1품 아문으로 오군도독부를 두어 문관체계의 최고관부였던 정2품 아문 육부보다 우위에 두어 무관에 대한 우대를 체계화한 점, 건국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군사력을 복원제압 및 요동경략의 시작과 동시에 9변군진체제로 정리하여 문치중심의 통치를 시행한 점, 위소체제와 같은 민호와 군호를 명확하게 분리시켜 군사체계를 안정화시킨 점 등이 특징이다. 그러나 충군제도의 운영과 폐단, 군수조달체계의 복잡함 등의 한계가 있어 영락제 이후 효율적인 군사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각종 법제에서 문관보다 무관을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홍무연간 건국이후 존재하는 무장세력을 위무하고 이를 통치체계에 포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비록 무관을 우대하더라도 이들의 우대책은 반드시 황제권에 의해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황제중심의 통치체계를 위한 목적이었다. 역설적으로 홍무제는 문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공훈없이 封公되는 것을 금지했다.⁶¹⁾ 인사추천을 하는 관사에서 공훈없는 문관을 모호하게 주청하여 봉작을 받으면 해당관원과 봉작을 받는 이를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했다. 홍무제에게 있어 공후로 봉하는 기준은 외방에 나가 장수가 되고 조정에

61) 『大明律』 吏律職制, 文官不許封公候. “凡文官 非有大功勳於國家 而所司朦朧奏請 輒封公侯爵者 當該官吏及受封之人 皆斬 其生前出將入相 能除大患 盡忠輔國者 同開國功勳 一體封侯諡公 不拘此律”

들어와 재상이 되어(出將入相) 환란을 제거하고(能除大患) 충성을 다해 나라를 보필해야(盡忠輔國)했다.

무관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면서 한편 군사력을 지휘하는 무관들의 반란에 대한 경계심으로 2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첫째는 친왕을 봉군하여 군사지휘권을 부여하고 무관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명대 친왕은 封典제도의 일환으로 책봉되었다. 명대는 봉전의 범주를 친숙과 신료로 구분하고, 친숙은 다시 國王(親王)과 郡王으로, 신료는 功臣의 封爵·推封·襲封, 土官의 承襲, 文官의 封贈 등으로 구분하였다. 친왕제가 처음 제정된 것은 1369년(홍무 2) 제왕봉건의 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1370년(홍무 3) 親王을 분봉하면서 우선적으로 황태자를 제외한 열번째 황자까지 친왕으로 분봉했다.⁶²⁾

〈표 8〉 홍무연간 親王 分封현황

구분	대상	封典
1	長子 標	皇太子
2	2子 棧	秦王
3	3子 桐	晋王
4	4子 棣	燕王
5	5子 櫛	吳王
6	6子 楨	楚王
7	7子 樽	齊王
8	8子 梓	潭王
9	9子 杞	趙王
10	10子 檀	魯王

이들은 변방의 요충지를 방비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병력을 지휘하여 군사작전을 시행하여 해당지역을 순찰하였기 때문에 塞王이라 불렸다. 새왕 이외에 齊王, 魯王, 趙王, 周王, 沈王, 伊王, 唐王, 郢王, 楚王, 湘王, 蜀王, 潭王, 岷王 등은 내지에 분봉되었다. 친왕

62) 『명태조실록』 권51, 홍무 3년 4월 을축.

지들을 봉번한 것은 황실의 인물들을 통해 변방을 방어하고 군사력에 대한 확고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하는 홍무제의 정치, 군사전략에 의해 봉번제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방의 친왕들은 군사권을 가졌지만, 내지의 친왕은 군사권이 없었다. 변방의 친왕이 가진 군사권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었으며, 발병은 홍무제의 재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변방의 친왕과 내지의 친왕이 자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군사력은 親王護衛指揮使司에 한정됐다. 친왕호위사는 守衛의 개념으로 설치된 것으로 王府의 호위를 담당했다. 명분은 호위였지만, 홍무연간이후 실질적으로 왕부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담당했다. 1372년(홍무 5) 설치된 친왕호위사는 처음 매 王府마다 3護衛로 구성되고, 衛는 左·右·前·後·中 5所로 구성됐다. 개별 所는 千戶 2명, 百戶 10명이 두어졌다.⁶³⁾ 호위사의 병력은 변방 친왕과 내지 친왕이 일률적이지 않지만, 대략 1,000~2,500명 병력이었다.⁶⁴⁾ 제도적으로 친왕의 제한된 군사권은 건문연간 연왕의 靖難之役に 건문제를 비롯한 황제측이 연왕의 반발을 예견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홍무제의 입장에서 무관들의 군사지휘권에 대한 경계심으로 친왕을 봉군했지만, 이들에 대한 경계심마저 작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자신의 사후 가장 염려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초래하였다.

두번째는 군사지휘권의 작동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황제에게 군령권을 귀속시킨 점이다. 명대의 衛所制는 在京에서 在外의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설치되었다. 일반 행정지역은 한 郡에 한 所를 설치하고, 소를 몇 개 묶어 衛를 설치했다. 일반 군인 112명에 대해 百戶所를 두고, 열개의 백호소에 千戶所를 두었으며,

63) 『명태조실록』권71, 홍무 5년 정월 입자.

64) 『명태조실록』권130, 홍무 13년 3월 입인.

다섯개의 천호소에 한개의 衛를 두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5,600명의 병력이 소속되었다. 위소에 소속된 병력은 명 건국과정부터 從征(주원장이 처음 봉기할 때 이후 개국에 이르기까지 수종한 군인), 歸附(건국과정에서 한인군웅이나 홍군, 원군에서 투항한 군인), 謫發(각종 범죄에 연관되어 充軍의 형벌을 받은 자), 垛集(일반 백성 가운데 징발된 군인)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위소는 주둔지가 정해져 있어 주둔지를 중심으로 각종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屯田을 경작하여 각종 비용을 충당했다.

홍무제가 지향한 군사지휘체계는 황제에서 五軍都督府, 都指揮使司, 指揮使司, 千戶所, 百戶所로 이어지는 군령체계였다. 이러한 군령체계에서 평소 오군도독부는 소관 위소의 병력에 올라있는 병력을 통솔하지만, 함부로 위소의 병력을 조발하지는 못했다. 병력의 조발은 철저히 황제에게 귀속되어 있어 유사시 황제가 임명한 지휘관에게 일정 위소의 병력을 조발하여 통솔하도록 하였으며, 군사활동이 종료되면 지휘관의 지휘권은 소멸되고 해당 병력은 원래의 위소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체계는 군사력의 사병화를 엄격하게 금지한 조치이며, 필요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종료에 따라 원래의 군사편제로 전환되는 체계였다. 홍무제의 군사지휘체계 구상은 명대 군사지휘체계로 정립되었다. 전국을 위소체제로 편제하고 중앙은 五軍都督府가, 지방은 都司가 병력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정벌 등 군사작전이 있으면 總兵官을 장수로 임명하여 調發된 위소의 군사력을 통솔하였다.⁶⁵⁾

황제로부터 특정 군사력의 지휘권을 부여받은 무관은 해당 임무수행을 위해 관련 군사력의 發兵을 명령한다. 이를 調發, 調遣 등이라 한다. 명대 군사행위에서 세부적인 책임소재를 의미할 때, 조발과 조건은 차이가 있다. 명령의 주체가 조발 및 조건의 명을

65) 『명사』권89, 志65, 兵1.

내리면, 이를 수행하는 군사지휘관은 조발과 조건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皇命으로 군사를 發兵하도록 명을 내릴 때는 金牌를 사용하고, 특정 인물을 차정하여 명을 내릴 때는 走馬符牌를 지참하여 보냈다.⁶⁶⁾ 1371년(홍무 4) 홍무제는 工部로 하여금 金牌, 走馬符牌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금패는 2개를 제작하여 中書省과 大都督府에 각각 보관하였다가 制書로 發兵을 명하면 중서성과 대도독부가 금패를 제출하고 內府에서 어보를 찍어 발급했다. 주마부패는 국가에 군사적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파견하는 사신이 차고 파견되었다. 처음 예부에서 唐·宋代 走馬銀牌의 제도를 모방하여 제작하도록 건의하자 홍무제가 尺寸은 당의 제도를 따르고, 格式은 송의 제도를 따르도록 지시하여 정밀하게 제작하였다. 금자패 20개, 은자패 20개를 제조했는데, 패문은 “符令所至 即時奉行 違者必刑”이었다. 주마부패는 鐵로 만드는데 너비는 2촌 5푼, 길이는 5촌의 크기에 위쪽에 飛龍 두 마리가, 아래쪽에 麒麟 두 마리를 새겼으며, 패 머리에 둥근 구멍을 뚫어 붉은 실로 매듭을 지었다. 주마부패는 內府에 보관하였다가 調發할 때 사용하였다.⁶⁷⁾

홍무제는 1368년(홍무 원년) 군사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황제로서 군사권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출정하는 장수들에 대한 각종 授節儀式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⁶⁸⁾ 군사권에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명 통치구상의 일환으로 예치를 강조하였던 점을 활용하여 각종 의식으로써 군사의식을 제정했다.

홍무제는 군령권에 관련하여 보고절차 및 발병절차를 엄격하게 법제로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사작전에 있어 작전권한을 자신이 직접 행사하기도 했다. 물론 황제중심의 명나라에서 최종 군사권은 황제에게 있지만, 광대한 영역과 급변하는 변방의 군사

66) 『명태조실록』권47, 홍무 2년 12월 을축.

67) 『명태조실록』권65, 홍무 4년 5월 을묘.

68) 『명태조실록』권33, 홍무 원년 7월 경술.

상황을 감안하여 황제가 해당 대장군을 임명하여 파견하여 해당 군대를 통수하도록 하였다. 홍무제는 처음 봉기하면서 군사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특히 오를 세운 이후부터 휘하의 군사지휘관에게 전투를 맡기면서도 중앙에서 스스로 군사전략 및 전술을 세워 이를 해당 군사지휘관에게 전달하여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주원장이 陳友諒과 그의 아들 陳理를 제압하고 1365년 徐達, 常遇春, 胡廷瑞, 馮國勝, 華高 등으로 하여금 주 전력을 지휘하여 淮東, 泰州 등을 정벌하도록 했다.⁶⁹⁾ 이 지역은 張士誠, 方國珍과 접경한 곳으로 주원장 군대의 東征이 본격화됨을 의미했다. 장사성과의 전쟁에서 서달은 전군을 지휘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주원장은 자신의 군사방략을 현장 지휘관 서달에게 전달했다. 일례로 1366년 4월, 서달의 군대가 興化를 취하는 과정에 주원장은 서달로 하여금 泰州, 興化, 海安, 通州, 高郵의 山川地勢를 그림으로 그려 보고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興化를 가장 중요한 군사요충지로 판단하고 이곳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도록 군사작전을 하달했다.⁷⁰⁾

군사편제와 문관인사 등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홍무제는 군사정책의 일환으로 군기의 제조와 조달에 관련된 사항도 중시하여 이를 규정화했다. 『제사직장』에 규정된 홍무연간의 군기관련 사항은 이전의 왕조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었다. 특히 軍器는 軍器局에서, 軍裝은 針工局에서, 군마관련 장비는 鞍轡局에서 관장하였다. 명대 군법에서 정해진 律은 매 100戶마다 銃手 10명, 刀牌手 20명, 弓箭手 30명, 鎗手 40명으로 할당됐다.⁷¹⁾ 특히 軍器局, 針工局, 鞍轡局 등은 다양한 군기를 제조하여 조달했는데 물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9) 『명태조실록』권18, 을사 10월 신축.

70) 『명태조실록』권20, 병오 4월 무오.

71) 『諸司職掌』工部職掌, 軍器軍裝.

〈표 9〉 홍무연간 軍器軍裝 조달물품 및 담당아문

衙門	물 품
軍器局	二意角弓, 交趾弓, 黑漆鉏子箭, 有蠟弓弦, 無蠟弓弦, 魚肚鎗頭, 蘆葉鎗頭, 馬軍鷹翎刀, 步軍腰刀, 將軍刀, 馬軍叉, 紅油團牌, 水磨鐵帽, 水磨頭盔, 水磨鎖子護項頭盔, 紅漆齊腰甲, 水磨齊腰鋼甲, 水磨柳葉鋼甲, 水銀摩挲長身甲, 併鎗馬赤甲
針工局	長胖襖, 袒ネ(+八)褲
鞍轡局	鞍, 轡, 鞭

* 전거 : 『諸司職掌』 工部職掌, 軍器軍裝.

홍무제는 무관들의 형정에 대해서 무관편제로 별도로 편성했다. 이는 군사지휘체계와 일반 행정체계를 구분한 것으로 일반 행정체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형정을 군사지휘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로 오군도독부에 단사관제도를 두어 형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원래 斷事官은 원대에 중서성과 樞密院에 설치되어 刑政과 獄訟을 담당하던 관직이었다. 명 건국초기 行樞密院을 두었지만, 단사관을 설치하지 않고, 大都督府에 설치했다. 대도독부가 五軍都督府로 개편되자 左·右都督의 지휘를 받았다. 오군도독부의 단사관은 刑獄을 총괄했는데, 건문연간에 폐지됐다. 즉, 오군도독부와 그 예하 衛所의 軍官과 군인, 軍戶에 대한 형법적용은 五軍都督府의 斷事官이 담당했다. 단사관의 휘하에 五司官(稽仁, 稽義, 稽禮, 稽智, 稽信) 등은各司와 지방의 都指揮使司, 衛所의 刑名 등을 일을 담당했다.⁷²⁾

주로 무관들의 형정을 담당하였던 斷事官은 내부적으로 五司를 두어 在京과 在外로 나누어 각지의 무직아문을 관장했다. 이의 구체적인 관할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72) 『諸司職掌』 五軍都督府斷事官.

〈표 10〉 홍무연간 斷事官의 刑政관할 체계

五司	區分	해당 衙門
左司	在京	驍騎右衛, 英武衛, 鎮南衛, 龍虎衛, 留守左衛, 水軍左衛, 瀋陽左衛, 瀋陽右衛, 府軍左衛, 羽林左衛
	在外	浙江都司, 山東都司, 遼東都司
右司	在京	府軍右衛, 水軍右衛, 留守右衛, 虎賁右衛, 廣武衛, 武德衛
	在外	陝西都司, 四川都司, 廣西都司, 貴州都司, 雲南都司
中司	在京	旗手衛, 和陽衛, 廣洋衛, 留守中衛, 牧馬所, 神策衛, 應天衛, 府軍衛, 虎賁左衛
	在外	直隸衛所, 河南都司
前司	在京	豹韜衛, 龍江衛, 飛熊衛, 金吾前衛, 府軍前衛, 留守前衛, 天策衛, 龍驤衛
	在外	湖廣都司, 江西都司, 廣東都司, 福建都司, 福建行都司
後司	在京	錦衣衛, 金吾後衛, 府軍後衛, 興武衛, 鷹揚衛, 江陰衛, 橫海衛, 留守後衛, 蒙古左衛, 蒙古右衛
	在外	北平都司, 北平行都司, 山西都司, 山西行都司

* 전거 : 『諸司職掌』 五軍都督府斷事官, 分問衙門.

홍무제는 명초의 형벌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로 充軍조항을 제정하여 다른 어느 왕조보다 엄격하게 시행했다. 특히, 『대명률』의 충군조항은 모두 46조항이었지만, 이후 1550년(嘉靖 29) 充軍條例는 213조항이었으며, 1585년(만력 13) 39조항이 늘어났다. 이처럼 홍무제 이후 명대 가장 중요한 형벌로서 충군은 늘어났다.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 가장 엄중한 충군제도를 시행한 명은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로 충군을 활용했다. 명대 민호와 군호로 구분된 호적제도에 기반하여 변방의 군호에 충역시킴으로써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박탈하였다. 명대 충군은 充軍, 邊遠充軍, 永遠 邊遠充軍으로 수준이 구분되지만, 문무관원이나 일반 백성으로 삼은 박탈되었다. 충군은 刑政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군역의 충원이란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충군운영에

있어 행정담당 관리들의 농간으로 억울한 충군 및 收賂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⁷³⁾

기본적으로 홍무제는 건국과정 및 건국 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와 일원적인 황제중심의 통치체계를 구상하면서 군사관련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 효율적인 지휘체계, 안정적인 군수보급, 엄정한 군기유지 등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홍무제의 의지와는 달리 각종 군사관련 문제는 명초부터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⁷⁴⁾ 일례로 병률이 아닌 명례율에 나타난 「處決叛軍」 조항은 반란군에 대한 세세한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변경의 城池에서 군인이 謀叛을 하면 수어관이 잡아 관에 넘기고, 드러난 자취와 증거가 명백하면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 도지휘사사에 문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도지휘사사는 관원을 뽑아 보내 심문하여 억울함이 없으면 곧바로 율에 따라 처치하고 사유를 갖춰 오군도독부에 보고하며, 오군도독부에서는 황제에게 주문을 올려 아뢰도록 하였다. 만약 포정사나 안찰사가 가 있는 곳이라면 이들이 함께 심문하여 처치하는데, 가령 군대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반한 군인을 잡아 죽였으면 이 범위에 들지 않도록 규정했다.⁷⁵⁾ 『대명률』에 나타난 병률은 이러한 홍무연간 군사관련 문제의 발생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명률』 이외에 별도로 홍무제는 『무신대고』를 반포하여 무관들의 각종 병폐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다.

73) 吳艷紅, 『明代充軍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10~15쪽.

74)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53, 2016. 99~100쪽.

75) 『大明律』 名例律, 處決叛軍. “凡邊境城池 若有軍人謀叛 守禦官捕獲到官 顯跡證佐明白 鞫問招承 行移都指揮使司 委官審問無冤 隨即依律處治 具由申達五軍都督府 奏聞知會 若有布政司按察司去處 公同審問處治 如在軍前臨陣擒殺者 不在此限”

5. 맺음말

이상으로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을 정리했다. 원말 몽골지배층의 착취적인 지배방식은 피지배층의 반발을 초래하여 농민봉기, 한인군웅의 등장 등 결과를 초래했다. 각종 반발에 대한 원 정부의 대응은 내부분열과 권력투쟁으로 군사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농민봉기는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급속하게 확대되어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분파적인 형태로 일원적인 군사활동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성장한 주원장은 개인적인 능력과 시대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한인군웅으로 성장했으며,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휘능력을 발휘하여 유력한 한인군웅세력을 제압하고 명을 건국하였다.

명 건국 이후 홍무제는 일원적인 황제중심의 통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군사력의 체계화에 노력했다. 군사편제를 개선하여 대도독부를 오군도독부로 개편하였으며, 전국을 민호와 군호체계로 편제하고 위소체계를 갖추었다. 순차적으로 오 건국과 동시에 군사일변도의 통치기구를 군정과 행정으로 구분하여 국가체계를 갖추었으며, 명 건국과 함께 북벌전쟁 수행 및 이의 원활한 체계화를 위한 군사편제를 갖추었다.

호유용의 옥사를 기점으로 중서성을 폐지하고 병부를 비롯한 육부의 직장을 강화함으로써 황제중심의 통치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군사권은 군정과 군령을 구분하여 병부가 군정을 담당한 반면, 군령권은 황제에게 직속된 오군도독부가 담당했다. 기존의 대도독부와 달리 오군도독부는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제로 홍무제의 군사인식에서 나온 군사정책이라 할 것이다.

홍무제는 지속적으로 군사체계의 강화 및 황제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여 원대의 군제를 개혁하면서 건국과정에서 성장한 무장세력을

철저하게 황제의 통치체계에 편입시켰다. 이를 위해 무관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켰다. 한편, 홍무제는 명 건국 이후 북원의 정벌전쟁, 요동경략 등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군사충돌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정책을 펼쳤다. 이는 조훈조장에 수록된 홍무제의 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홍무제의 군사인식은 구체적인 군사정책으로 홍무연간 시행되어 정착되었다. 명 건국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인 군사편제를 체계화시켰으며, 잔존하는 북원세력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명의 변방 방비체계를 확립시켰다. 홍무제의 군사정책이 크게 전환된 시점은 유력 군웅세력에서 명의 건국으로 황제체제를 갖춘 1368년(홍무 1), 호유용의 옥을 계기로 중서성 폐지와 육부체계의 확립이 시행된 1380년(홍무 13), 유력한 북원세력이었던 요동의 나가추가 투항함으로써 요동경략이 본격화된 1387년(홍무 20) 등이었다. 이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홍무제의 군사정책은 무장세력 중심의 지배체제기, 제국으로써 일원적인 군사체계 정립기, 황제중심의 군사체계 강화기, 명 중심 국제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체계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 군사정책은 이후 동북아의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명대 군사정책의 기본으로 작용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은 전례없이 모든 군사력을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집중시켜 운영된 점, 편제상으로 정1품 아문으로 오군도독부를 두어 문관체계의 최고관부였던 정2품 아문 육부보다 우위에 두어 무관에 대한 우대를 체계화한 점, 건국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군사력을 북원제압 및 요동경략의 시작과 동시에 9변군진체제로 정리하여 문치중심의 통치를 시행한 점, 위소체제와 같은 민호와 군호를 명확하게 분리시켜 군사체계를 안정화시킨 점 등이 특징이다. 그러나 충군제도의 운영과 폐단, 군수조달체계의 복잡함

등의 한계가 있어 영락제 이후 효율적인 군사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홍무제에 의해 정립된 명대 군사인식 및 군사제도는 명의 대외 군사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바탕이 되었으며,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군사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조명간 외교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홍무제의 군사정책, 명의 군사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홍무제의 통치구상, 대조선 군사정책, 홍무제와 명의 군사제도 및 군사정책이 조선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조선의 여진정벌 및 여진관계, 조선의 대마도 정벌, 왜구문제, 임진왜란시 명의 파병 등은 명의 군사제도와 군사정책에 대한 이해없이 조선의 관점에서만 분석되기 어렵다. 이상의 연구과제는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2016.4.7, 심사수정일: 2016.5.23, 게재확정일: 2016.5.24.]

주제어 : 홍무제, 통치구상, 병부, 오군도독부, 요동경략, 제사직장, 대명률, 대고

<ABSTRACT>

Hongwu emperor's military recognition and military policy in the early Ming Dynasty

Kim, Kyeong-Lok

In this paper, I researched Hongwu Emperor(洪武帝)'s plans of country governance, his military recognition and military policy which was the general source of military policy in the Early Ming Empire. First, I will focus on state of a Hongwu period and the process of military system, and let's look at linking Hongwu's rule plan and military policy.

Hongwu period was meaningful in established of the new Military Command System(軍事指揮體系) and instituting the Military System(軍制) besides common change of era. The representative military system of Ming Dynasty, and it is influenced not only China history but also Korea history, Japan history the neighboring countries.

Ming dynasty established, but also it marks the reconstruction of a large number of Han Chinese regime's military system and institutions. In terms of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system, as the founding emperor of the Ming dynasty, Hongwu emperor considered it very seriously. In the early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Ming Dynasty, Hongwu emperor ordered to to formulate the military system with his military experience. In the Ming Dynasty emperors reign, politics was influenced by the former. Military organization was not only a classic military command system but also reflects Hongwu emperor's military recognition, it contains rich ethical thoughts.

Hongwu emperor's military thought stems from domination history of China and has been influenced a lot by traditional military

system in china's history. The political trend to strengthen imperial power continued in Ming dynasty. As we saw before, Hongwu emperor abolished prime ministership by reason of the uprising of Hu, Wei-Yong(胡惟庸), and put 6 Ministry directly under jurisdiction of emperor. Besides that, in order to control military power more tightly, Hongwu emperor divided the office for Joint chief of staff, called Great chief of staff(大都督部), into five office for chief of staff(五軍都督部).

Not long after the Ming dynasty established, the military situation was unstable, and the economy also suffered severe damag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consolidate the new power, Hongwu Emperor drew lessons from the failure of Yuan(元) dynasty, summarized the successful experience on the management of past ages after repeated thinking. Due to a profound historical background and his military experience in his early years, he attached great hatred towards the military official embezzlement. This thoughts ran through the whole process when formulated "the Great Ming Code", "Da Gao"(大誥) and other messages as well as regulations.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se measures, the effect of military system did not achieve the desired results.

Key words : Hongwu emperor(洪武帝), plans of country governance(統治構想), Military Command System(軍事指揮體系), Ministry of War(兵部), Great chief of staff(大都督府), five office for chief of staff(五軍都督部), Strategic governance against Liáo dōng(遼東經略), Jesajikjang(諸司職掌), Great Ming Code(大明律), Da Gao(大誥)

